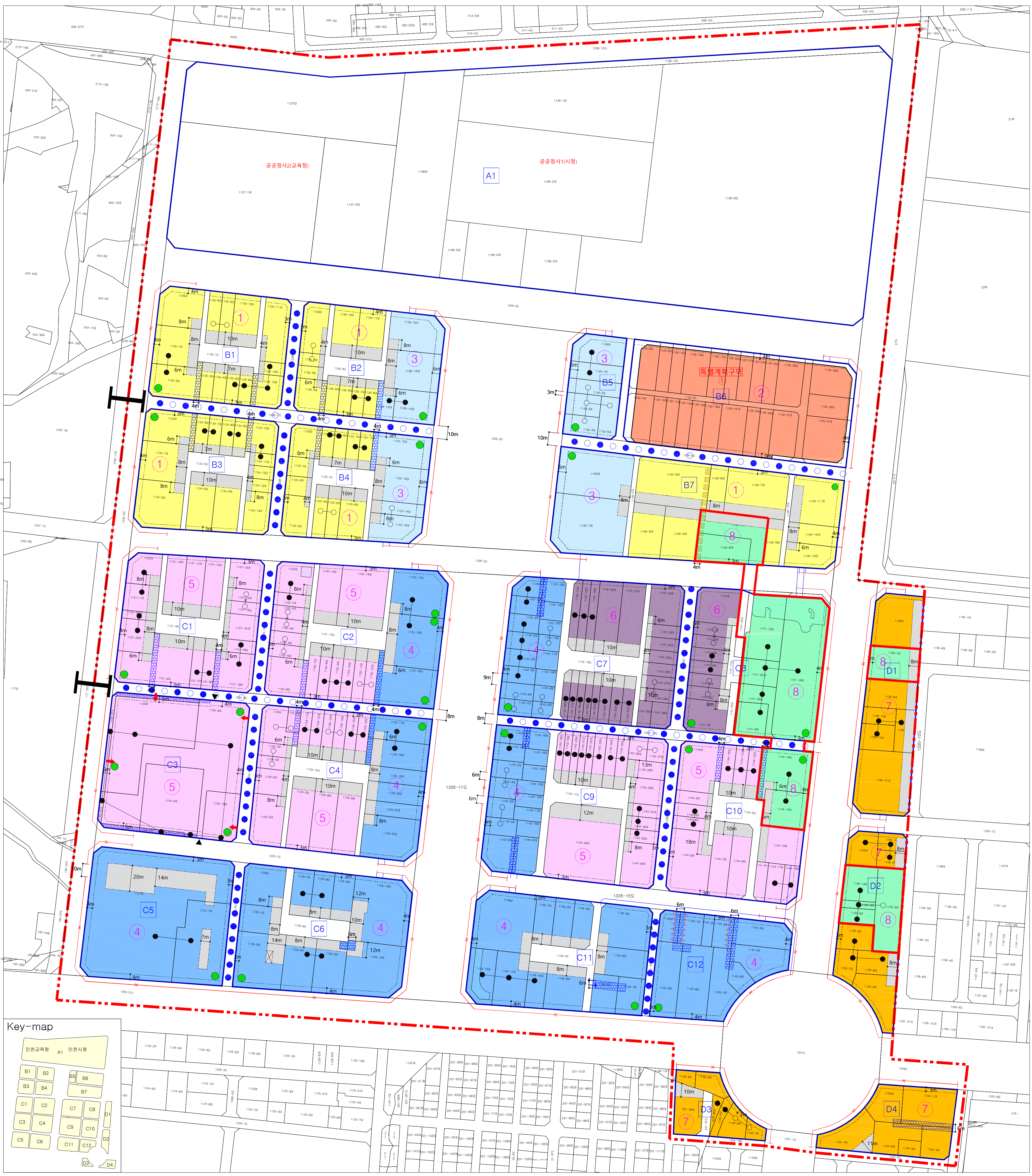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(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)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N

SCALE 1:3,000

0 25 50 100 175m

▬ ▪ ▬	지구단위계획구역
🟥	특별계획구역
═	지적선
- - -	건축한계선
⊥⊥⊥⊥	벽면한계선
●—●	공동개발(지정)
○—○	공동개발(권장)
○×○	맞벽건축
● ● ●	보행자전용도로
● ○ ●	보행자우선도로
▨ ▨ ▨	공공보행통로
▦	보차혼용통로
├─┤	연결브릿지
▭	주차장
⊠	필로티주차장
▧	공개공지
●	쌈지공원
—×—	차량출입불허구간
➡	보행진입구
▲	차량출입구
▩	차량진출입로
═	가구선
A1	가구번호

※ 건축물의 용도

구분			도면표시	용도
①	허용		U1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1	· 교육연구시설(학교제외)
		특정층	5	·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적, 서점, 공연장(극장)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
	불허		I	· 불허용도 I 참조
②	허용		U1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-	-
		특정층	5	·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적, 서점, 공연장(극장)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
	불허		I	· 불허용도 I 참조
③	허용		U2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	권장	전층	3	·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
		특정층	-	-
	불허		II	· 불허용도 II 참조
④	허용		U1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3	·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
		특정층	-	-
	불허		III	· 불허용도 III 참조

구분			도면표시	용도
⑤	허용		U1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2	·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, 상점, 운동시설
		특정층	6	·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·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
	불허		III	· 불허용도 III 참조
⑥	허용		U1	·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4	·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 · 의료시설 중 병원(병원, 종합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) · 노유자 시설
		특정층	-	-
	불허		III	· 불허용도 III 참조
⑦	허용		U3	· 준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, 기숙사형 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한함)
	권장	전층	-	-
		특정층	-	-
	불허		IV	· 불허용도 IV 참조
⑧	허용		U4	· 의료시설 (격리병원 제외)
	권장	전층	-	
		특정층	-	
	불허		V	· 불허용도 V 참조

※주거복합건물(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) 허용기준 : 정형화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

구분	불허용도 I	불허용도 II	불허용도 III	불허용도 IV	불허용도 V
용도	· 위락시설 · 안마시술소 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, 원룸형 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, 기숙사형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– 장의사· 제조업소(식품제조가공업 제외)· 수리점 –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· 판매시설 중 도매· 소매시장(백화점· 쇼핑센터· 대형점은 제외) ·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·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) · 창고시설 ·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· 장례시설(의료시설 「의료법」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제외)	· 위락시설 · 안마시술소 · 공동주택 · 주거복합건물(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함)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· 도시형 생활주택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– 장의사· 제조업소(식품제조가공업 제외)· 수리점 –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· 판매시설 중 도매· 소매시장(백화점· 쇼핑센터· 대형점은 제외) ·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·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) · 창고시설 ·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· 장례시설(의료시설 「의료법」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제외)	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, 원룸형 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, 기숙사형주택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– 장의사· 제조업소(식품제조가공업 제외)· 수리점 –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· 판매시설 중 도매· 소매시장(백화점· 쇼핑센터· 대형점은 제외) ·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· 운동시설(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에 한함) · 창고시설 ·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· 장례시설(의료시설 「의료법」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제외)	· '주택법'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, 원룸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, 기숙사형주택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제외)	· 의료시설용도 외 시설

※ 본 도면은 금회 변경된 부분에 한해 유효함

구 분	작 성 자	입안권자 및 결정권자	
	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경안엔지니어링	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	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
직 위	사 장	-	지구단위계획담당
직 명	-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민 영 삼	이 해 진	이 상 영
확인인			